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21. 10. 5 규칙 제104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시설 관리자의 책무) 공공시설 관리자(개별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의 관리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 재산관리관을 말한다)는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3조(개방공간)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개방시간)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개방시간은 평일 09:00 ~ 18:00로 한다.

제5조(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개방공간의 사용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은 개방공간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허가서를, 불허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개방공간의 사용허가 시 개방공간 및 개방시간 등 개방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시설 개방공간(제3조 관련)

구 분	공 간 명
본 청	에이스홀
	비 전 홀
	컨벤션홀
	시청야외음악당
	청소년수련관 앞 광장
처지구청	대회의실
기흥구청	다목적홀
수지구청	대회의실
	광 장
읍·면·동	대회의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 신청서

신청자	개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단체	단체명 (대표)		전화번호	
		주소			
사용시설					
사용일시		년 월 일(요일)	시부터		
		년 월 일(요일)	시까지		
사용목적					
사용인원		총 명			
기타 참고사항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용인시장 귀하

※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필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용인시 공공시설 사용에 따른 수집·이용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이메일, 소속(단체명), FAX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시설 사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용인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허가서

신청자	개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도로명)				이메일		
	단체	단체명 (대표자)		전화 번호		FAX		
		주소 (도로명)				이메일		
사용시설								
사용일시	년 월 일(요일)			시부터				
	년 월 일(요일)			시까지				
사용목적								
사용인원	총 명							
준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책임자 지정·배치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주의에 따라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의 민사상·형사상 책임 3. 이용료를 받거나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금지 4. 시설물의 오손, 파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 변상 책임 5. 사용 후 집기 및 기자재 등을 정리한 후 사용책임자의 최종 확인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용인시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사용 불가 통지서

신청자	성 명 (단체명)			
	주 소			
신청 내용	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	년 월 일(요일)	시부터	
		년 월 일(요일)	시까지	
	사 용 목 적			
불허가 사유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용인시장 직인